

의견청취

구미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 결정(폐지)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

구 미 시

구미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 결정(폐지)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의 번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3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토미공원은 1987년 2월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(건교부 고시 제42호, 1987.02.07.)되었으나, 장기간에 걸쳐 공원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7월 사유지의 미집행구간이 실효 결정(구미시 고시 제2020-188호, 2020.07.02) 되었고, 경상북도(교육감) 소유의 산32-1번지 역시 2012년 12월 공원조성 계획 결정(구미시 고시 제2012-202호, 2012.12.20) 이후, 공원조성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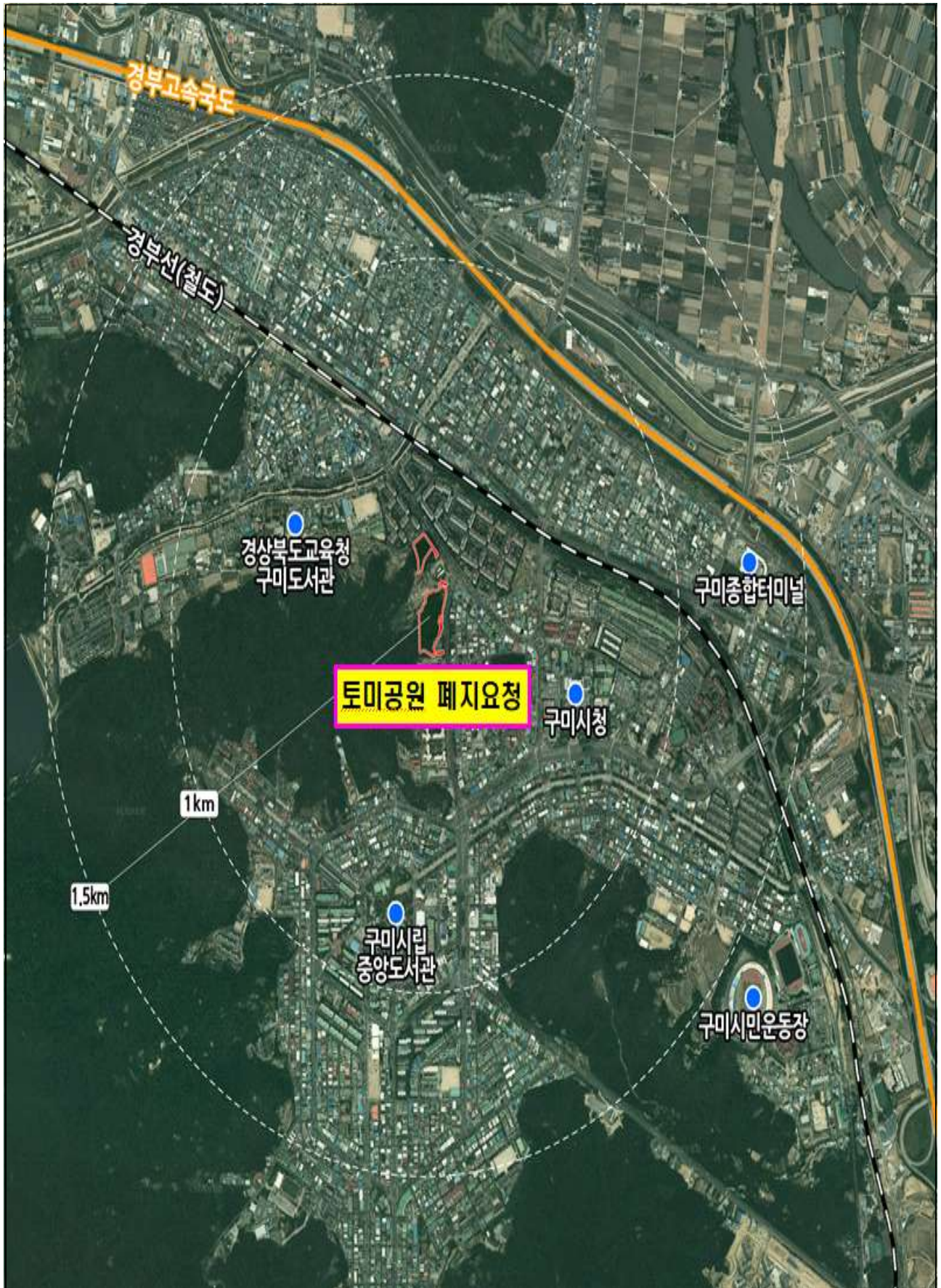
나. 따라서 최초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, 약 36년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 되어 사실상 공원의 효력을 상실한 토미공원을 폐지하고, 토미공원 내 경상북도(교육감) 소유부지에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구미도서관을 이전 조성하여 명품 교육도시의 위상에 맞는 창의·융합형 인재 육성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의 문화요구를 충족하고자 함

2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변경 내용

☐ 공간시설(공원) 폐지

- 근린공원(토미공원) 폐지
 - 위 치 : 구미시 원평동 산32-1번지 일원
 - 면 적 : 19,717m²

□ 위 치 도(토미공원)



□ 드론 촬영 지도(북남 방향)



※ 가운데 부분은 사유지로 2020년 7월 실효 결정되었음

□ 위성 지도(남북 방향)



[첨 부]

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폐지) (안)

요	약
---	---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(폐지) 권한(경북도 사무위임조례)

- 근린공원 폐지 : 구미시장

소관별	내 용	수입기관
도시 계획과	4. 도시기반시설(도시·군계획시설)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다. 공원(어린이공원, 소공원. 2만㎡미만 규모의 공원으로 한정)	시장·군수

□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폐지)(안)

- 공간시설(공원) 폐지 - (구미시장 권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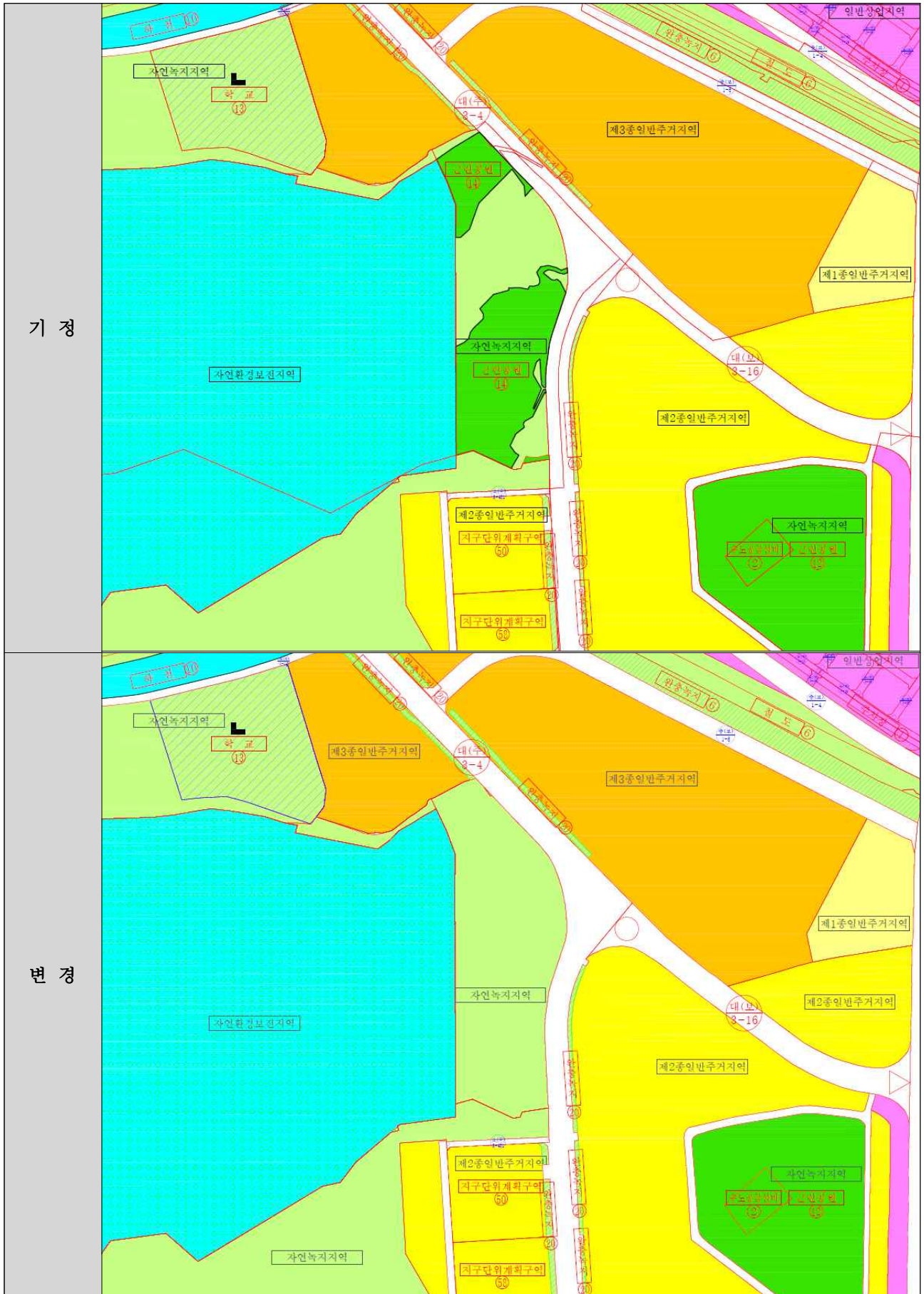
■ 공원 결정(폐지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14	토미	근린 공원	원평동 산32-1번지 일원	19,717	감) 19,717	-	건교부 제42호 (‘87.02.07)	자연녹지 지역

■ 공원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4	토미	공원폐지 A=19,717㎡ → 0㎡ (감 : 19,717㎡)	노후된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이전 조성을 위하여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사실상 상실한 근린공원을 폐지하고자 함

<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폐지)(안) 도>



관계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2조 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. 다만,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(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라. 공원 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은 제외한다)

소 관 부 서		도시계획과
입 안 자	과 장	전 천 수
	팀 장	장 봉 섭
	담 당 자	박 대 건 (480-5405)